##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05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 엄태영·정동만·김정재

권영진 • 조지연 • 박충권

이만희 · 서천호 · 박정하

김재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 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 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 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 법률 제 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실내 1회용품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방송,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 또는 구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내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제 10조제3항에 따라 실내 1회용품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해당 고객 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  |
| ①・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
| <u> &lt;신 설&gt;</u>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     |  |  |
|                     | 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실내       |  |  |
|                     | 1회용품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  |  |
|                     | 방송,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      |  |  |
|                     | 또는 구두 등 대통령령으로 정      |  |  |
|                     | 하는 안내 방법으로 고객에게       |  |  |
|                     | 고지하여야 한다.             |  |  |
| <u>③</u> (생 략)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  |  |
|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                     |  |  |
|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                       |  |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1. ~ 2의3. (생 략)     | 1. ~ 2의3. (현행과 같음)    |  |  |
|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  |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  |  |
| 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  |  |
| <u>한 자</u>          |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실내      |  |  |
|                     | 1회용품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  |  |
|                     |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       |  |  |
|                     | 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4. ~ 16. (생 략)      | 4. ~ 16. (현행과 같음)     |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